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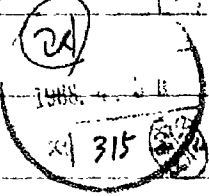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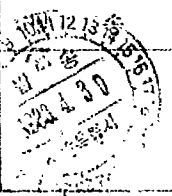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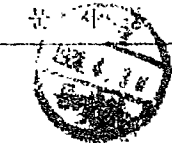
번호: 88-315
 방법: 자료제공, 특집, 의견(설명)
 과장: 국장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6)

분류기호 문시번호	시설30312-11	시청 시	시청 시
보통기호	영구·준영구 10.5.3.1.		
주요 보통기호	준영구		
시행일자	88. 4. 30		
목적 기 구	도시계획국장 전 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1과장	법무담당관 협조통제관	분 제
기안 개 원	이상진 (기안)		
일 수 참 조	각 안 참조		
제 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		
(제1안) : 내부결재			
1. 도정30312-211호('88.3.2)와 관련입니다.			
2. 위호로 중량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요청된 사항이 '88년			
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('88.4.15)에 상정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			
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코사 합니다.			
첨부 : 1) 관계서류 1건			
2) 고시문 및 도면 1부. 끝.			
(제2안)			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			

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: 88. 4. 29



제목 : 갑읍.

1. 도설30312-1358호C(8A4P)과 관련입니다.
2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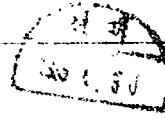
라. 게재내용 : 별첨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 - 2/5

발신 : 과장



제목 : 갑읍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,

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서과22, 34, 40, 44.

(제5안)

수신 : 중랑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같음.

도시정비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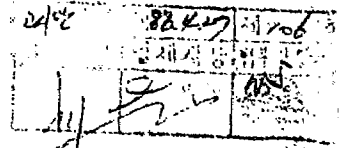
1. 도정30312-211호('88.3.2)관련임.

2. 위호로 요청한 귀 구관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이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
되었기 통보하니, 관련도면 정리및 필요절차를 이행하는 등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
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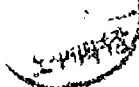
첨부 : 고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고

시

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

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택와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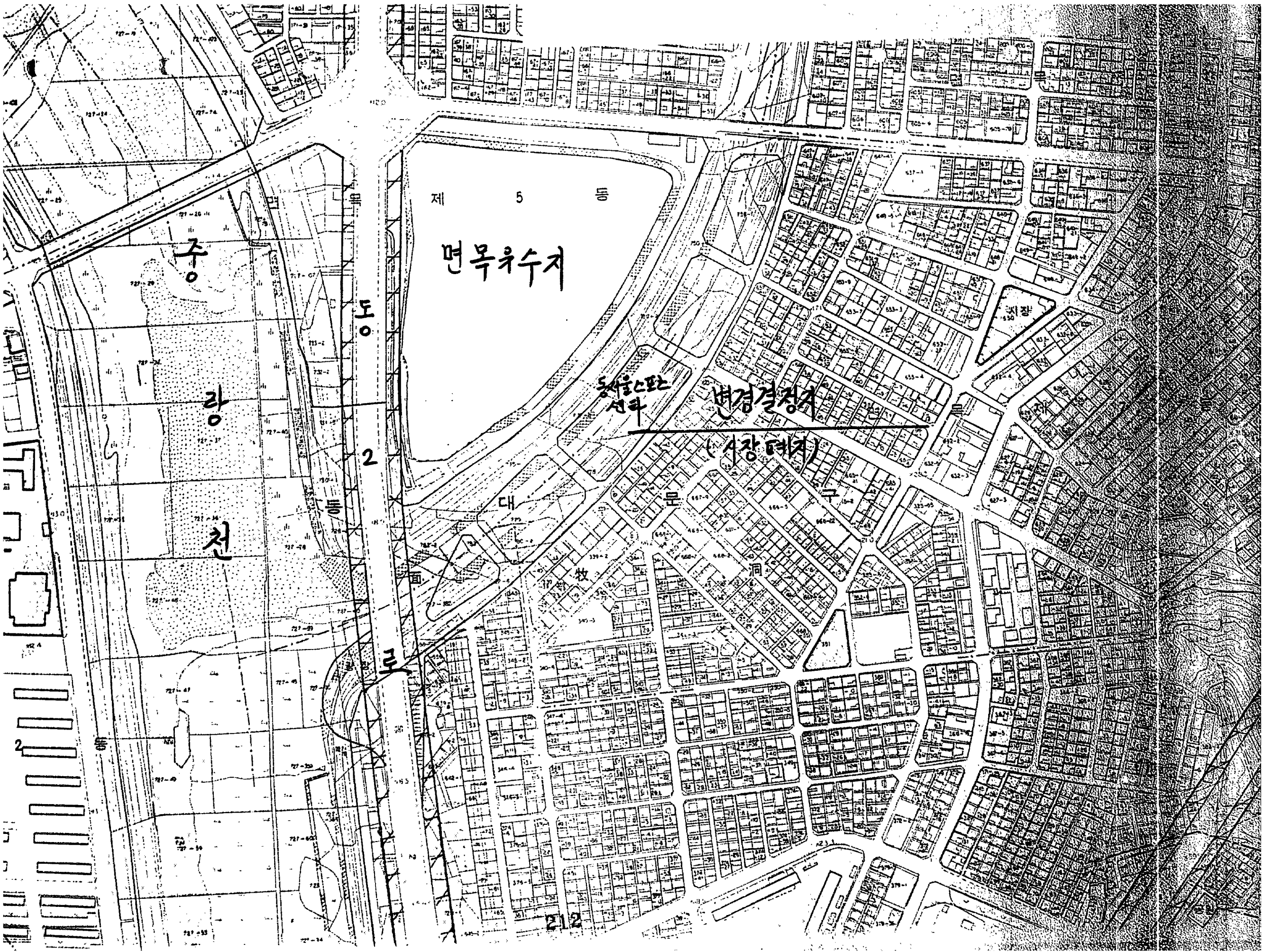
1988. 4. 30

서울특별시장

○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 ²)	비 고
기정	시 장	중랑구 면목동 70C-7	4,114.11	동서울스포츠헤나
변경	"	"	0	폐 지

○ 변경결정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

제 5 등

면목우수지

동성초등학교

변경결정지

(4장 1페이지)

대

문

동

중

강

천

도

2

부

212